

-미국사례연구

I. 문제 제기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언론사는 국민의 알권리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가 되는 범죄에 관하여 보도를 한다.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인의 권리 즉 인격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될 수 있는 한 배제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보호간에 상충되는 갈등이 발생되기도 한다. 범죄보도의 경우,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으로 내세우는 반해, 피해당사자는 개인권리의 보호를 앞세워, 그 이익간의 상호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은 개인의 권리보호에 대해 관심이 높은 미국의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범죄보도가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분석 한다. 특히 잘 알려진 범죄보도사건 판례 중 개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집중 분석 하여 본다.

미국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개인주의사회이며, 자본주의사회이고, 그리고 어느나라보다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우리와는 사회문화적 전통이 다르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하는 범주의 국가 중 선두주자라는 측면에서 이 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여기서 범죄보도란 원칙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관련사건 기사를 대상으로 하고, 범죄라는 개념은 형법학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하고 유해한 행위로 정의된다. 개인의 권리란 인격권으로서 정의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명예 보호권, 프라이버시 보호권,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등에 국한시킨다.

아울러 이 글은 편집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례중심으로 전개하며, 그 내용은 사실개요, 판례의 요지로 본 보도의 문제점 그리고 보도의 개선방향에 중점을 둔다.

II. 수정헌법 제 1 조와 개인의 권리

미국에서의 개인의 권리 즉 인격권은 정신상의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인격권에 대한 관념은 본래 존 로크(John Locke)의 자유주의 사상속에서 권리 가 배양되어 천부의 권리로서 인정받게 되었다.¹⁾

이러한 자유주의 이론을 채택한 미국의 독립헌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규정하며²⁾ 수정헌법 제 1 조는 「미국의회는 언론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헌법 이념은 개 인과 정부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언론이 개인에 미친 손해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할지라도 정부의 명예에 손상을 끼쳤을 때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헌법적 전통을 수립하게 되었다.³⁾

이러한 전통에 의해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될 수 없게 되었고, 뉴욕타임즈사 대 설리반(N.Y. Times co. v. Sullivan)간의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 알라바마주대법원은 「합중국헌법의 수정헌법 제 1 조는 명예훼손적인 공표까지도 보호할 의무는 없다」라는 판시와 함께 원고인 설리반에게 50 만달러를 지급토록 판결하였다.⁴⁾

이러한 언론자유는 한계는 예일대근교의 에머슨(Emerson)교수도 지적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성취하는 것이 사회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언론의 자유란 다른 사회 적 및 정 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끝 하나의 도구 또는 방법 이기 때문에 이 자유는 공공의 질서나 정의, 평등, 도덕적 발전과 같은 다른 가치등을 감안해야 된다」고 지적함으로써 언론자유는 제한성을 강조하고⁵⁾ 그러한 제한은 명예훼손에 관련된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관심이 대두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와 같이 고도로 발달한 정보사회가 등장하면서 개인의 권리의식이 점차 분화되면서 생긴 권리의 하나가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엘 워렌(Samuel D. Warren)과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D. Brandeis)에 의해 법적 개념으로 발전된 프라이버시권⁶⁾은 파베지히 대 뉴잉글랜드 라이프사(Pavesich v. New England

Life, Inc. Co.)사건에서 최초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법이 개인에게 그의 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생존하는 권리 이상의 것을 부여한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단지 감옥에 넣지 않는다거나 물리적 간섭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자연법으로부터 유래되고 시민의 법에 의하여 인식된 자유는 물리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을 포괄한다」라고 천명 했다.⁷⁾

이렇게 주로 미국에서 발전되어 온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세계적 관심이 되어 1948년 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2 조에서는 「인간은 누구든지 그의 사생활(Privacy),

가족, 가정 및 통신에 대하여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민간은 간섭 이 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천명하였다.⁸⁾

언론에 의 한 사생활침해는 범죄인도의 경우 초상의 무단촬영같은 수단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는 범죄의 혐의가 벗겨진 후에도 한 개인의 사친이 언론에 게재 발표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범죄보도와 관련되는 개인권리의 침해는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 문제이다. 언론이 범죄사건에 관한 피의사실을 재판전이 나 도중에 보도함으로 공정한 재판에 방해가 됨을 미국에서는 개인의 기본권리의 하나로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 14 조는 「어떠한 주정부라도 미국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든지 강요할 수 없으며, 법의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시민의 생명, 자유, 혹은 재산을 빼앗을 수 없으며, 그리고 어떤 사람에 게도 법의 대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은 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권에 대한 감시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범죄기사에 있어서 피의사실을 과대 보도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배심제도를 도입 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재판지 변동(Change of Venue)등 재판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⁹⁾

그러나 이러한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공정재판권이 아무리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기본적 인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와의 갈등에서 공표가 우선해야 사회적 이익이 더욱 신장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고려하여, 범죄보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 한 유명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II. 범죄보도와 개인의 권리침해-분야별 사례를 중심으로-

범죄 보도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 즉 인격권의 침해는 명예훼손침해사례, 프라이버시침해사례, 공정재판침해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명예훼손과 범죄보도-

(1) Gertz 대 Robert Welch, Inc. 사건

① 사실개요

1968년 시카고 경찰관인 누시오(Nuccio)는 넬슨(Nelson)이라는 청년을 사살하였다 주장하는 누시오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넬슨의 가족은 엘머 게르츠(Elmer Gertz)를 변호사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월간지인 아메리칸 오피니언은 1969년 3월호에 『음모, 리차드 누시오와 경찰에 관한 전쟁』이란 제하에 이 사건의 원고측 변호사인 엘머·게르츠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¹⁰⁾

문제는 동지에 게재된 기사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고, 게르츠가 사건에 대한 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란 점이다. 즉 게르츠는 약 15년전부터 전국법률인협회(National Lawyers Guild)의 회원이자 임원으로 일해 왔으나 게르츠나 그의 단체가 1968년에 시카고에서 있는 시위행위를 주도한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또한 게르츠가 레닌주의자라거나 전위적인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더구나 산업 민주주의 맑스동행의 회원도 아니었고, 범대학사회주의단체의 회원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아메리칸 오피니언지의 편집장은 게르츠에 대한 비난을 검증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만지 편집장은 「필자가 누시오사건에 대해 심층조사하여 결론을 맺게된 것」이라는 주석을 달았을 뿐이다. 이 잡지에는 관계기사와 함께 게르츠의 사진이 실렸으며 「붉은 조합의 엘머 게르츠, 누시오를 유도한다」라는 사진 설명이 붙어져 있었다. 로버트·벨치사는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잡지를 시카고 전역에 걸쳐 배포하고 가두판매를 하기도 했다.

이에 게르츠는 아메리칸·오피니언지의 기사가 시민이자 법조인인 자신의 평판에 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일리노이주 북부지원에 고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정은 뉴욕·타임즈의 법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결정하고, 원고가공적 인사 또는 공적인 대상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공증의 쟁점에 관한 논쟁을 보도하는 기자의 특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피고측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었다.

②판결요지

결국 이 사건은 미 연방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항소심 판결은 과기 되고 새로운 공판을 열도록 하였다.

포웰(Powell)재판관이 대표로 집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¹¹⁾

㉠ 신문이나 방송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공표했을때…… 수정헌법 제 1 조에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 보호를 한다는 조항은 없고 또한 헌법에 보호할 가치를 밝히고 있지 않다. 공적 인 장 점 에 관해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부주의한 실수가 대단히 과실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문제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 당법정은 시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전문직업에 종사하였다고 그에게 공적 인물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고가 지역사회에서 얻은 명성이나 유명도에 관한 명백한 증거의 부재와, 원고가 지역의 행사에 참여한 모든 생활을 고려할 때 그를 공적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당법정은 뉴욕타임즈법리가 이 사건에 부적당하게 적용되었고, 피고측에게 유리 하게 판결을 내린 것도 잘못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뉴욕타임즈사 대 설리반사건에서 정의된 현실적 악의의 법리와 공적 인물 또는 공적인 대상의 개념을 바꾸어 놓은 사례로서 주목되었다.

(2) Rosenbloom 대 Metromedia, Inc. 사건

①사실개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市에 있는 소규모의 WIP 라디오방송은 1963년 10월 4일 저녁 6시 뉴스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했다.¹²⁾

㉠ 시경찰이 음란서적 상인들을 급습했습니다. 오늘 오후 베스타가 1800번지에 있는 로젠블룸의 집을 수색한 결과 경찰의 주장에 의하면 외설적인 서적(allegedly obscene books) 1천여 권을 압수하고 그를 음란서적 소지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특별수사대는 또 그의 창고를 급습, 3천여권의 「외설서적」을 압수했습니다. 특별수사대장은 이로써 「필라델피아」 시내에 음란서적을 공급해 온 주요 공급원이 일망타진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 WIP 방송은 이 기사를 6시 30분 뉴스에도 되풀이 한 뒤, 세 번째 인 8시뉴스부터는 세 번째 문장 가운데 「외설서적」이라는 부분을 「외설적이라고 알려진 책」(reportedly obscene book)으로 수정해서 그날 밤 여섯번이나 반복보도했다.

이후 1964년 5월 로젠블룸은 배심으로부터 그의 잡지가 음란서적이 아니었다는 무죄 평결을 받게되자 즉각 연방지법에 WIP 방송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제기이유로써 WIP가 10월 4일 저녁 6시와 6시 30분 뉴스에 압수된 그의 책을 「reportedly」와 「allegedly」라는 단서없이 그대로 외설서적이라고 단정하여 표현했으며, 10월 21일에는 그의 소송에 관한 보도에서 자신과 자신의 동업자들을 「음란서적 장사꾼」과 「아가씨책 장사꾼」(airlie book peddlers)으로 잘못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IP는 문제된 기사의 진실성과 언론의 특권을 내세웠다. WIP 보도국장은 첫 번째

체포기사는 특별수사대장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으며, 두 번째 소송기사도 분명히 뉴스원인 지방검사와 경찰국 등에 누차 확인하고 보도한 것으로 더이상 확실하게 할 수는 없다고 증언했다 특별 수사대 장 역시 자신이 WIP를 비롯한 언론기관에 직접 전화로 제보했으며, WIP의 뉴스 내용은 그가 말한 것을 정확하게 보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같은 주장을 검토한 연방배심은 WIP 방송의 문제된 보도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피해보상을 하라고 평결했다.

②판결요지

2심에서는 WIP가 승소하고 결국 연방대법원에 로젠블룸이 상고하여 WIP가 승소했다.¹³⁾

·연방대법원은 1971년 6월 7일, 현실적 악의의 유무가 판결의 핵심이 되는 NYT의 판례는 일반적인 공공의 관심사에 관련된 한 개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도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항소심의 판결이 옳다고 이를 최종적으로 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이유로써, NYT 판례의 적용여부에 있어 무조건 원고를 공직자나 공적인물, 그리고 일반 개인으로만 구분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며, 그보다는 특정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시 말해 그 문제가 공공의 관심사라면 일반 개인이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가 작아질 수 없는 만큼, 문제된 내용이 일반적 인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것이 라면 비록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보도에도 NYT 의 판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NYT 판례의 적용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명예훼손의 적용여부는 공직자나 공적인물이 아닌 공적 관심사까지 그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보호대 상을 확대시켰다.

(3) Hepps 대 Philadelphia Newspapers 사건

① 사실개요

필라델피아신문사는 음료업자인 원고들이 암흑가의 인물과 범죄조직에 관련되어 있다는 특집 기사를 게재 하였다. ¹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Philadelphia Inquirer)신문에 게재된 5 개의 추적 (investigative) 기사 연재호에서 발단되었다. 이 기사는 모리스 S. 헵스(Maurice S. Hepps)와 제네랄 프로그래밍회사(General Programming, Inc.), 그리고 제네랄 프로그래밍회사의 특약점들이 특정한 「암흑가」의 인물들과 조직범죄에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에서 보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필라델피아 신문사, 그 신문의 발행 인 그리고 기사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 했다.

펜실베니아주법원은 피고 전부승소의 평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원고가 명예훼손적 발표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1 심법원의 결정에 보복하면서 상소하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인용하고, 1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② 판결요지

㉠형사법상의 무죄추정의 법리를 유추하여 일반시민의 명 예는 평판이 좋은 것으로 추정하여 야 하며, 따라서 사적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표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는 피고가 절대적 항변의 방법으로 발표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NYT 사건 및 게르츠사건 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사적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대하여 사적 개인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우면 안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언론사에 진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즉 허위의 추정 이 되는 경우에도 피고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야 한다.

㉡ 한편 명예훼손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측의 단순한 과실(negligence)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측의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실적 악의 및 진실입증책임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프라이버시권과 범죄보도-

(1) Cox Broadcasting Corp. 대 Cohn 사건

①사실개요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콘(Cohn)씨의 17 살된 딸이 강간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소녀의 신원은 사건당시에는 공표되지 않았으나 사건발생 8개월후 콕스방송사의 기자인 왓셀 (Wassell)이 강간 및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 여섯명의 청년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참석하여 기소장을 열람하면서 피살자의 성명을 알아냈다. 그후 소녀의 성명을 밝힌 내용이 방송되었다.¹⁵⁾

그런데 조지아주에서는 언론이 봉욕한 부녀자의 성명 이나 신원을 공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②판결요지

조지 아개 대법원은 피고인 콕스방송사가 피살된 소녀의 아버지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피고가 항변의 근거로 삼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한 주장은 기각되었다. 그 근거는 조지아주의 법은 특정한 희생자의 성명이 공공한 심사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상고심에서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관한 현행법을 보면 문제가 된 정보가 이미 공개된 기록물일 때는 사생활상의 이익은 주장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 1 조와 제 14 조 그리고 언론보도의 공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도 그러 하다. 조지아주에서 강간희생자의 이름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 프라이버시권침해로 기소한 근거는 순전히 공표의 내용을 문제삼은 것에 불과하다.

㉡ 만일 재판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상의 이익문제가 있다면 주는 공중이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적 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일단공개 된 법정에서 법정기록을 통해 정당한 정보가 노출된 이상, 언론이 그것을 공표하는 데 규제를 말아서는 아니된다.

이 판례는 보도된 기사가 아무리 사생활을 침해하더라도, 그것이 공개된 재판과정에서 나온 정보일 경우에는 언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Time, Inc. 대 Hill 사건

① 사실개요

1952 년 3 인의 탈옥수가 필라델피아 교외에 살고있는 「힐」 (James Hill)씨의 가정에 침입하여 19 시간 동안 인질소동을 벌였다. 이 사실은 곧 신문에 보도되었으며, 3 명의 탈옥수중에서 2 명이 경찰관에 의해 사살되어 더욱 유명해졌다.¹⁶⁾

그후 이 사건을 묘사한 조셉 헤이스의 소설 「절망의 시간」 (Desperate Hours)이란 책이 발행되고 후에 이 소설은 연극과 영화까지 상연되었다. 이 소설이 1955 년 연극으로 공연되었을 때 라이프 지는 『실제 있는 범죄 가 연극에 긴박감을 준다』 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연극의 장면과 「힐」 씨의 옛날 그 주택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 사진은 「힐」 의 아들이 탈옥수에게 붙잡혀 있는 모습이었는데 『야수같은 범인』 이란 제목이 붙어 있었다.

라이프지의 이와 같은 기사와 사진보도에 대해 「힐」 은 뉴욕주의 시민법에 의거 프라이버시침해로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일심은 힐 가족의 경험을 토대로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타임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 기사로 인한 힐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고, 또한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탈옥수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②판결요지

본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언론과 출판에 관한 법적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은 사실(truth)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브레딘 판사는, 뉴욕시민법은 뉴스가치 (news worthiness)가 있는 사람이나 사건을 보도할 때 사실은 면책사유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힐」은,실제로 인질경험이 있는 한 프라이버시 권리보다는 뉴스가치가 앞선다고 하였다.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은 라이프 지 기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쓰여졌는가의 여부로서, 합법적이고 뉴스가치가 있는 인물의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설정문제였다.

판결에 관해 라이프 지에 게재된 기사의 주제는 실제적 사건과 관련된 연극공연에서 취재된 것이며…… 정보를 제공하는 일과 오락을 제공하는 일 사이의 구분은 명백하며…… 소설을 쓴 헤이즈는 단순히 책과 연극대본을 썼을 뿐이며…… 책과 잡지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 판매되었으나 수정헌법 제 1 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저해된 행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뉴스성 있는 인물과 사진에 관한 사실보도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주장으로부터 보호되며, 바꾸어 말하면 그 공표가 뉴스성이 없는 때에는 프라이버시소송이 허용될 것이라는 주요원칙을 제시하였다.

- 공정재판권과 범죄보도-

(1) Sheppard 대 Maxwell 사건

①사실개요

이 사건은 범죄보도와 관련한 공정재판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사무엘 ·쉐퍼드박사는 오하이오주에 사는 유복한 정형외과의사였다. 그런데 1954년 6월 4일 그의 부인이 집에서 살해되었다. 목격자와 증거물을 찾지 못한 경찰은 쉐퍼드를 이 사건의 혐의자로 취급하였다. 이 지역신문들도 경찰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왜 쉐퍼드를 투옥시키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죄인으로 단정 보도했다.¹⁷⁾

그리고 7월 20일에 신문들은 1면의 사설란을 통해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신문은 「어떤 사람이 살인에 대한 죄가를 치루지 않고 무사히 넘기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들은 재판전에 증거에 대한 관계당국의 설명을 인용보도했다. 「살인자가 살해 현장인 침실로부터 아래층까지 피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 없앴다」는 형사의 증언까지 인용했으나 재판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어느 신문은 쉐퍼드부인의 피묻은 벼게의 사진을 게재, 마치 외과의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살해한 것처럼 보도된다.

7월말경에 신문사설들이 『늦추지 말고 빨리 감옥에 처넣어라』, 『경찰은 왜 1급용의자를 심문하지 않는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자, 7월 30일 오후 10시에 그는 살인혐의로 체포되고,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수년동안 감옥생활을 했다.

②판결요지

이 사건은 1966년 연방대법원에서 쉐퍼드의 승소로 무죄판결이 났으며, 그 내용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언론은 특히 형법분야에서 항상 효과적인 사법행정의 보조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오고 있다…… 언론은 단순히 재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개적 음미와 비평을 위해서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절차에 의해서 자행되는 오심을 경계하는 것이다.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고가 어떤 측면에서 편견을 띠게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명백

할 때, 언론의 법정출입은 제한되어야 한다. 대양의 재판은 공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쉐퍼드의 변호인단이 요청한 것처럼 판사는 보도기자들의 법정이용을 통제하는 엄중한 규칙을 채택해야만 했다.

㉢ 심리판사는 배심원들과 증인들을 뉴스매체로부터 격리시켜야만 했다. 그리고 심리판사는 경찰, 증인, 양쪽의 변호인단이 언론에게 기사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

(2) Estes 대 Texas 사건

① 사실개요

미국의 1960 년대에 텍사스주에서는 재판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텍사스의 금융업자로서 횡령혐의로 구속된 빌리 솔 에스테스(Bille Sol Estes)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⁸⁾

그는 텍사스 형사항소심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연방대법원은 에스테스가 TV 방송중계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재판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대륙횡단버스 만큼 큰 텔레비전 중계차가 법원 밖에 주차하고 있었고, 그 법정의 2 층은 중계용 설비들로 숲을 이루고 있었다. 두대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법정 칸막이의 안쪽에 자리잡고있었고, 네대의 카메라가 눈에 띄게 문 바로 밖에 정렬되어 있었다. 그리고 케이블이 중계를 뱀처럼 휘감고 있었다.

당시 주요 텔레비전사인 CBC, NBC 그리고 ABC, 거기에 지역국인 KL-TV 의 카메라설치 가 허용되고, 그외 다른 방송국은 방송용 녹화 필름을 일괄적으로 제작하도록 허용되었다. 그 외에 AP 통신, UP(United Press)통신, 그리고 지방신문의 사진기자들이 법정내에서 촬영하도록 허가되어 이 작은 법정은 온통 카메라 천지였다고 기술되고 있다.

② 판결요지

㉠공개재판이 요청되는 목적은 피고가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그리고 불공정하게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재판과정은 신성한 법정이 기계장비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입증했다.

수정헌법 제 1 조가 보장하는 자유는 -뉴스매체들이 법정에서 텔레비전방송을 할 권리까지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언론의 권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언론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재판절차에 대해 절대적 공정을 유지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㉔ 전파저널리즘옹호자들이 법정에서 텔레비전카메라를 축출한다면 이는 인쇄매체를 위해서 전파매체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였다. 즉 「신문기자는 그의 타이프라이터 또는 인쇄기를 소지하고 입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㉕ 재판법정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는 것이 증인들의 증언의 질을 해친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텔레비전이 배심원들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하는 기회를 증대시킬지도 모르는 부적절한 사실을 재판과정에 주입시킨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서 재판을 텔레비전방송하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판사의 임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록 그것이 경찰관서 또는 엄중한 취조와 유사한 심리적 괴롭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정에 있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존재는 정신적인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정의 되었다

(3) Irvin 대 Dowd 사건

① 사실개요

어빈(Irvin)사건은 재판전의 공표가 공정한 호심이 있기 전에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미연방대법원이 주의 형사유죄판결을 파기한 첫번째의 신문재판사례이다.¹⁹⁾

이 사건의 살인피의자 레슬리 어빈(Leslie Irvin)은 1955년 4월 8일 강도와 부정수표 남발 혐의로 인디애나 주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후 며칠이내에, 에반스빌 경찰과 경찰은 「미친 개 어빈」이 1954년부터 1955년까지에 발생한 6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자백했다고 기자에게 공표했다 뉴스매체들은 전쟁이라도 일어난 날처럼 어빈사건을 묘사했고, 많은 기사들이 그가 「6명을 살해한 명백한 살인자」라고 어빈의 재판전에 공표되거나 방송되었다. 훗날 파견검사는 많은 비판 기사를 읽었다고 술회했다. 어빈은 결코 6건의 살인사건중 한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다.

1955년 11월 14일 재판이 시작되어 주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1961년에 연방대법원은 어빈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비록 어빈이 궁극적으로 유죄라 할지라도 재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결과 그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② 판결요지

㉠판결은 피고의 권리와 관련된 편견을 지닌 보도의 효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판결은 어민이 당한 공표를 고려해서 「공표가 편견을 조성 한 것 이 명 백하고 유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판결은 어빈을 위한 논거들이 인디아나주 기브선군에서 그에 대한 심리가 있기 전 6~7 개월 동안에 홍수처럼 보도된 일련의 신문 제목들, 기사들, 만화들 그리고 사건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법정에서의 재판대신에 호심전에 행해진 신문재판에 대해 법정은 비난했다. 즉 방송과 신문의 합작은 재판전에 그리고 심지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배심원에게 압력을 넣어서 배심원이 공판전에 제출된 증거를 채택할 가능성을 변호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하였다. 그래서 어느 판사는 재판전 공표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취해졌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IV. 범죄보도의 개선방향

언론의 범죄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관심사이다. 그러나 언론의 범죄보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을 어떻게 비교형량해서 한계를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어려운 과제이며, 현재까지도 미국언론법제분야에서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 법원판례는 범죄보도로 인한 개인권리의 침해에 관하여 주요 원칙들을 설정해오고 있다. 여기서는 위의 판례분석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도의 개선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명예훼손과 언론보도의 개선방향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부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조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에 관련된 소송제기에는 많은 제약이 가해져 왔다. 다시 말하면 명예보호권에 관련된 미국의 언론병제도가 추구하는 이익이 사적이익으로부터 공적이익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의 책임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의 책임을 묻는 경우, 민사에서는 대체로 적시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형사상에 있어서는 사실적시 이외에 공익관련성까지 함께 내세우고 있는 경향이 있다.

결국 미국의 판례가 원하는 범죄보도의 개선 방향은 사실적시의 진실여부를 결정적인 판단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실질적 해악(actual malice)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중요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해악의 기준은, 공직자에 대한 공무수행비판이 명예훼손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이에 적용키 위해 성립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올수록 그 대상은 공직자(public officer)로부터 공적인물(public figure) 그리고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²⁰⁾

결국 범죄보도와 관련해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경우 적시사실의 진위를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언론측에 「실질적 해악」이 있었는가를 명예훼손책임의 기준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조되고 있다.

(2) 프라이버시와 언론보도의 개선방향

범죄보도판례분석에서 보듯이 프라이버시권리와 국민의 알권리가 갈등할 때 공표가 우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권리요건을 갖춘 것이라도 범죄보도가 뉴스성이 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때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어 왔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정당한 공공의 이익 또는 일반적 이익 (legitimate public or general interest), 공적 인물(Public figure), 공적 기록물(public record)」 등을 들고 있다.²¹⁾

이러한 공익의 기준은 확일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프라이버시권리의 성질과 침해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 설정은 쉽지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라 하면 범죄자의 체포, 구금, 법의 집행, 범죄의 희생자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적 인물을 정치인, 관료, 배우,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자발적인 유명인과 범인, 그 가족, 피해자 등의 비자발적 공적 인물이 포함되고 있다.²²⁾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입법활동에 의해 증대되어 왔다. 1974년의 프라이버시권(the Privacy Act, 1974)은 입법 목적 가운데서 적용제외는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에 한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가 상충되는 경우, 특히 범죄보도에서는 프라이버시권리보호가 미약하다고 추정된다.

(3) 공정재판과 범죄보도의 개선방향

미국에서는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지변경, 재판연기, 재판의 재판결, 배심원거부, 적병절차에 의한 호소 등을 법이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재판으로 인한 공정재판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가지 범죄보도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첫째는 정부가 채택한 카젠바하지침(Kazenbach Guidelines),²³⁾ 둘째는 신문사가 채택한 톨리도 지침(Toledo Guidelines),²⁴⁾ 셋째는 법조계서 채택한 필라델피아 변호사협회정책 선언문(Philadelphia Bar Association Policy Statement)등이다. 카젠바하지침은 법무성관리들이 범죄사건에 관한 정보公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법무성관리들이 피의자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정보도 말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톨리도 지침은 보도할 수 없는 금기사항으로 다음 6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피고소자의 사전 범죄 기록 ② 자백 ③ 피고소자에 게 불리 하든지 혹은 유리한 검사의 진술 또는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론과 관련된 경사의 진술 ④재판을 위해 선출된 배심원의 이름 ⑤배심원 부재중에 이루어진 논쟁 ⑥법정에서 거부된 증거에 대한 언급 등이다.

필라델피아 변호사협회정책 선언문은 모든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제공은 경찰서장이나 서장이 지정한 경찰간부에 의해서 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수사기간 동안에는 어떤 정보도 그것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혐의자가 범죄를 인정했다든지 혹은 고백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단 재판도중 경찰, 경찰, 피고인은 언론에 어떤 진술도 하지 말고 오직 증거가 사실을 말하게끔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판례분석에서도 보듯이 언론이 범죄사건에 관한 피의사실을 재판전이나, 도중에 보도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이 방해됨이 지적되었다. 언론이 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등을 내세우나 피의사실을 과장보도하거나 기자의 감정이 개입되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이 세심하게 마련되어있고, 그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공정재판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

1) 장용, 언론과 인권(서울 선명문화사, 1969), 177

2) Fred Siebert, Theodore Peterson, Wilbur Schramm, Four Theories of the Press, (Urbana, 111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6), pp. 45~46.

3) 전개서, p. 34.

4) Kenneth S. Devoled., Mass Media and the Supreme Court (N .Y. : Hastings House), pp.307~314,

5) Thomas T. Emerson,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N.Y. : Vintage Books, 1970), p. 9.

6) Samuel D. Warren,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 「Harvard Law Review, vol. 4. 1890, pp. 193~220

7) 서정우외 2 인공저, 언론통제이론(서울 법문사, 1983), 120 면에서 재인용.

8) 전개서, 동면에서 재인용.

9) Donald M. Gillmor, Free Press and Fair Trial, (Washington, D.C : Public Affairs Press, 1966), pp.115-141 참조 .

10) K.S. Devol, of, cit, PP.332~33f 참조.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323, 945

Ct 2997. 41 1.ED. 2d 789(1974).

11) 전개서.

12) 전개서. pp.329-332. 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S. 29, 91

S. Ct. 1811, 291.Ed 2d 296(1971).

13) 전개서.

14) 언론중재, 1986 년 가을호 118~122 에서 재인용.

15) Cof Broadcasting cop. v. Cohn.420.U.S 469 955.Ct. 1029.43 1.Ed.2d 328 (1975).

16) Time, Inc. v. Hill 385 U.S. 374 87.5.Ct. 534, 17 1. Ed.2d 304 (1967).

17) Shephard v. Florida, 341 U.S.S0, 715. Ct. 549, 95 1.Ed. 740 (1951).

18) Estes v. State of Texas, 381 U.S.S32,855.Ct. 1628. 14. 1 Ed.20 543(1965) .

19) Trvin v. Dowd,3660.5.717,815.Ct 1639,6.1.Ed.2d 751 (1961).

20) William E. Francoie, Mass Media Law Regulation 3r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pp. 128-135

21) Harold L. Nelson, Dwight L. Teether, from Law of Mass Communications (New York . The Foundation Press, Inc) pp. 220 ~229.

22) William L. Pressor, "Privacy, "California Law Review, vol . 48, 1960. p.423.

23) Harold L Nelson, and D.L.Teether Jr ,op. cit. PP.276-289.

24) 서정우외 2 인, 전게서, 112 면.

25) American Bar Association Legal Advisory Committee on Fair Trial and Free Press, The Rights of Fair Trial and Free Press, 1969 및 D. Gillmor, The Reardon Report : A Journalist's Assessment 「Wisconsin Law Review Vol. 251. 1967 참조.

위원회소식

청주지방토론회 개최, 「선진사회와 언론중재」 라는 주제로

당위원회는 1987년 6월 23일 청주 은성관광호텔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정우위원(연세대 교수)의 「선진사회와 언론중재」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과 자유토론이 있었다.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청주지방의 언론계·학계·법조계 등 각계인사가 참석해 중재제도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